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의견표명)

□ 민원 제목 : OO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중지 처분의의

□ 신청 취지

- OO재개발 정비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주변 거주자와 재건축 입주예정자 간의 갈등이 집단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는바, 이 민원 공사로 인한 생활소음 등으로 유발되는 주민간 분쟁 최소화를 위한 방안 검토 요청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이 민원공사 시공사들의 생활소음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주요 건설장비의 사용중지를 명령하여 이 민원 공사가 사실상 중단되었으니, 이를 취소해달라

□ 의결서

I 00지구 공사중지 처분 이의

민원읍부즈만위원회 의 결

민원표시 OO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공사중지 처분 이의

관계부서 OO구청 □□□과

주 문 피민원인에게, OO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주변 거주자와 재건축 입주예정자 간의 갈등이 집단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는바, 이 민원 공사로 인한 생활소음 등으로 유발되는 주민 간 분쟁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22. 12. 19.

(별지)

이 유

1. 민원 원인

민원인들은 OO지구 재개발아파트(이하 '이 민원 아파트'라 한다) 입주예정자들로, 피민원인이 2022. 10. OO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의 생활소음 발생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후, 이 민원 공사 시공사들에게 소음을 유발하는 주요 건설장비의 사용 중지 명령을 처분하여 사실상의 공사 중단으로 입주 지연이 예상되니, 이를 취소해 달라

2. 관계부서의 주장

이 민원 공사 현장 인근 OO아파트 주민들이 2021. 8.부터 2022. 10.까지 생활소음 민원 125건을 집중 접수하여 「소음·진동관리법」 및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¹⁾」에서 정한절차에 따라 신고자들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의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이 민원 공사 시공사들에게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이하 ‘이 민원 처분’이라 한다)을 한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한 것이다.

그리고, 유사 민원 재발 방지를 위해 이 민원 공사 시공사들에게 「소음·진동관리법」 준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고, 이 민원 공사 현장에 대한 수시 순찰 등을 통해 현장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공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나. 이 민원 공사 현장 인근에 위치한 OO아파트 주민이 피민원인에게 생활소음민원을 접수(2021.8.2.~2022.10.31.)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준/건]

연도	구분	합계	전화	인터넷	방문
	합계	125	113	10	2
	2022년	54	45	8	1
	2021년	71	68	2	1

1)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1호(ES 03303. 1c/규제기준 중 생활소음 측정방법)

다. 관계부서에서 생활소음 민원을 접수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민원 공사 시공사들의 생활소음 규제위반 사항이 드러났으며, 이후 이에 대한 행정처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건설(주)

위반일자	위반사항	측정소음 [dB]	행정처분	과태료	비고 (측정장소)
2021.9.15.	규제기준 초과 1차	78	방음시설 보강명령	OO천원	OO아파트
2021.9.27.	규제기준 초과 2차	73	방음시설 보강명령	OOO천원	"
2022.1.19.	규제기준 초과 3차	73	방음시설 보강명령	OOO천원	"
2022.4.20.	규제기준 초과 4차	73	소음발생행위의 중지명령	OOO천원	"
2022.10.13.	규제기준 초과 5차	70	소음발생행위의 중지명령	OOO천원	OO아파트

2) OOOOOO(주)

위반일자	위반사항	측정소음 [dB]	행정처분	과태료	비고 (측정장소)
2021.10.25	규제기준 초과 1차	69	방음시설 보강명령	OOO천원	OO아파트
2021.11.1.	규제기준 초과 2차	69	방음시설 보강명령	OOOO천원	"
2021.11.23	규제기준 초과 3차	72	방음시설 보강명령	OOOO천원	"
2022.9.22.	규제기준 초과 4차	72	소음발생행위의 중지명령	OOOO천원	"
2022.10.31.	규제기준 초과 5차	71	소음발생행위의 중지명령	OOOO천원	"

라.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 및 과태료, 행정처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관련 【별표 8】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대상 지역	소음원	시간대별		
		아침, 저녁 (05:00~ 07:00, 18:00~ 22:00)	주간 (07:00~ 18:00)	야간 (22:00~ 05:00)
주거지역 (이하 생략)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2) 「소음·진동관리법」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마.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이 발생한 경우 2) 소음원이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인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2호의2	60	120	200

3)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73조 관련 【별표 21】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소음원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공장·사업장로정	작업시간의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 등의 사용 명령	작업시간의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 등의 사용 명령	작업시간의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 등의 사용 명령	소음진동발생의 명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붙임과 같다.

나. 판단 내용

1) 피민원인이 이 민원 공사 시공사들의 생활소음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주요 건설장비의 사용 중지를 명령하여 이 민원 공사가 사실상 중단되었으니, 이를 취소해 달라는 민원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민원인이 이 민원 공사 현장 인근 OO아파트 주민들의 생활소음 민원을 접수한 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현장을 즉시 방문(2인/1조)하여 「소음·진동관리법」 및 「소음·진동 공정시험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생활소음을 측정하는 등 해당 민원 처리와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게다가, 피민원인은 이 민원 공사 시행사들의 생활소음 유발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지속 실시하는 등 생활소음 민원의 빈발화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 민원 공사 현장 인근 OO아파트 주민들이 접수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OO 재건축 입주예정자들과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의 신뢰성을 기초로 균형감 있게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비추어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민원인의 이 민원 공사 시공사들의 생활소음 규제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이 위법·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다만, 이 민원 공사 현장 인근에 OO아파트, OO아파트 등이 인접 위치해 있어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 유발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점과 특히 이로 인하여 OO지구 재건축 입주예정자 간의 갈등이 집단민원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방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피민원인이 이 민원 공사로 인한 생활소음 등으로 유발되는 주민 간 분쟁 최소화를 위한 방안 검토가 필요해 보이므로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5항에 따라 피민원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붙임 관계 법령 등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3. 제1항 각 호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4.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관련 [별표 8]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대상 지역	소음원	시간대별			
		아침, 저녁 (05:00~ 07:00, 18:00~ 22:00)	주간 (07:00~ 18:00)	야간 (22:00~ 05: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음향기	옥외설치	60이하	65이하	60이하
	음향기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이하	55이하	45이하
	음향기	공장	50이하	55이하	45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이하	50이하	40이하
	사업장	기타	50이하	55이하	45이하
	사업장	공사장	60이하	65이하	50이하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마.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이 발생한 경우 1) 소음원이 공장, 사업장, 확성기,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외의 공사장인 경우 2) 소음원이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인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2호의2	20	60	100
		60	120	200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관련 [별표 21]

위반 행위	근거 법령	소음원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23조 제1	공사장, 공장, 사업장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중지명령

우	항	으로 한 정함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 건설기계 등의 사용 등의 명령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 건설기계 등의 사용 등의 명령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 건설기계 등의 사용 등의 명령	
		확성기로 한정함	소리의 크기 조절 확성기의 출력 설치위치를 지정 등의 명령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23조 제4항		규제 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	공사중지명령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2년 12월 19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제도개선 의견표명)

□ 민원 제목 : 보훈명예수당 관련 제도 개선 요구

□ 신청 취지

- 보훈명예수당 소급적용 요구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안양시로 전입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보훈명예수당 신청 등에 대하여 안내를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안양시 계속 거주자에게는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안양시에 계속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보훈명예수당 등의 신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요청

□ 의결서

민원음부즈만위원회 의 결

민원표시 보훈명예수당 소급적용 요구

민원인 한 ○ ○

피신청인 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

주 문 피신청인에게, 안양시로 전입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보훈명예수당 신청 등에 대하여 안내를 의무화 하고 있는 반면, 안양시 계속 거주자에게는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안양시에 계속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보훈명예수당 등의 신청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23. 1. 13.

(별지)

이 유

1. 민원 원인

민원인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2022. 11. 9. 피신청인에게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이하 “이 민원 수당”이라 한다) 지급 신청을 하여 2022. 11. 15.부터 이 민원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민원인은 피신청인이 이 민원 수당 지급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아니하여 2017년부터“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이 민원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그동안 받지 못한 이 민원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 하였다.

2. 피민원인의 주장

민원인은 안내의 고지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민원 수당은 “조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고,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신청”을 기반으로 하는 지원내용이다. 또한, “조례”상 고지 및 안내의 의무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고지의 의무가 없으며, 당사자의 신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민원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00동 행정복지센터는 2022년 10월 경 민원인의 국가유공자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 문의에 대하여, 사망위로금과 이 민원 수당이 존재함을 구두로 안내하였고, 민원인의 경우 배우자의 사망 시기가 10년 이상 경과되어 사망위로금 대상이 아니며 이 민원 수당은 지원 대상에 해당되어 이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한 사실이 있다.

나. 민원인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2022. 11. 9. 피민원인에게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이 민원 수당 지급 신청을 하여 2022. 11. 15.부터 이 민원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다. 민원인은 피민원인이 이 민원 수당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었으며 적극적으로 보훈대상자 파악을 하지 아니하여 보훈대상자가 누릴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피민원인은 관련 법령 및 조례를 보았을 때,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 민원 수당을, 민원인이 피민원인에게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급적용 해 달라는 민원인의 주장은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사건번호 2017-1813호, 2019. 9. 29.)가 ‘보훈명예수당 소급지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 건에 대하여 ‘보훈명예수당은 법적인 근거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고, 소급 또한 법적인 근거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한다’며 기각한 사례가 존재하므로 보훈명예수당 소급적용은 어렵다고 주장한다.

마. “조례” 제10조 제4항은 ‘우리 시로 전입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등 필요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 시 각 동의 보훈담당자는 전입자에게 개별 연락하여 이 민원 수당 신청을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불입과 같다.

나. 판단 내용

1) 살펴건데,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11조는 시장은 수당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결정을 하고 수급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당은 매분기 초 15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조례에 따르면, 수당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비로소 피민원인에게 이 민원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인데, 이 민원의 경우 민원인이 2022. 11. 9. 피민원인에게 이 민원 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2. 11. 15.부터 이 민원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또한, 이 민원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 하지 아니하므로 피민원인에게 이 민원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다만, 민원인이 신고주의라는 어려운 기준으로 무조건 권리자의 잘못 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 과도한 처분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연령 분포를 고려해 보았을 때, 그 주장이 일부 타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안양시 전입자에게는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 민원

수당 신청 안내를 의무화 하고 있는 반면에 계속 거주자에게는 별도의 안내체계를 가동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피민원인이 안양시에 계속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보훈명예수당 신청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므로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5항에 따라 피민원인에게 제도개선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붙임 관계 법령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배우자
- 2. 이하 싣락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

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9. 15., 2013. 5. 22.>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 9. 15.>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이하 "전몰군경등"이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6., 2011. 9. 15.>

④ ~ ⑥ 생략

제9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14조의2제1항, 제22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교육지원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개정 2011. 9. 15.>

② ~ ⑤ 생략

■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 시장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121 - (추 1)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등을 지급할수 있다. 1. 수당은 1명당 분기별 30만원을 지급한다.2. 희생·공헌자의 사망위로금은 1명당 15만원을 지급한다.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수당 등의 신청) ① 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사망위로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당 등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급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로 전입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등 필요한 지원 신청을 할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보훈명예수당 지급 결정 및 지급)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수당 등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결정을 하고 수급권자에게 통보한다. ② 수당은 지급신청일이 속한 분기부터 지급하며 매분기 초 15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 하되 수당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③ 신청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 동장은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급대상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